

대전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나1055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5. 9.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소2336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전 중구 D건물, 11층 E호에서 친환경제품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9. 3. 20. 원고에게 G이라는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20.부터 2019. 6.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0,400,000원의 투자금¹⁾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 등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4. 8. 피고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095),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투자원금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중 2,67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금 명목으로 그 전부를 회수하여 갔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2,674,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가담자가 약정한 돈의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투자자들이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가담자의 권유와는 별도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투자자들 상호간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되어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들을 통하여 유사수신상품에 투자한 원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수익금을 뺀 금액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10,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가 합계 6,125,000원²⁾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4,275,000원(= 10,400,000원 - 6,125,00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로 유사수신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투자 여부 및 수익 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인 점, ②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여 투자의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점, ③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형사 처벌되었을 뿐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까지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한 점, ④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을 전부 개인적 이익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금 중 절반이 넘는 금원이 수익금으로 회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5,000원(= 4,275,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1) 예금송금의 방법으로 2019. 3. 20. 1,200,000원, 2019. 4. 10. 1,300,000원, 2019. 6. 6. 5,000,000원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2019. 5. 6. 1,450,000원, 2019. 5. 7. 1,450,000원

2) = 2019. 4. 5. 80,000원 + 2019. 4. 12. 55,000원 + 2019. 4. 12. 80,000원 + 2019. 4. 20. 95,000원 + 2019. 4. 27. 70,000원 + 2019. 4. 29. 670,000원 + 2019. 5. 3. 60,000원 + 2019. 5. 11. 150,000원 + 2019. 5. 15. 110,000원 + 2019. 5. 23. 110,000원 + 2019. 5. 26. 300,000원 + 2019. 6. 1. 340,000원 + 2019. 6. 5. 2,955,000원 + 2019. 6.

14. 330,000원 + 2019. 6. 19. 110,000원 + 2019. 6. 24. 200,000원 + 2019. 6. 29.
210,000원 + 2017. 7. 10. 200,000원